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41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총괄 검토	2
2. 개별법률 검토	7
(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7
(2)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1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15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9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24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26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3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
3. 회부연월일 : 2024.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개정안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파산선고(후 미복권)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의 결격사유·해임사유

법률	종류	대상 자격·직업 및 업무	유사자격·직업	사유
경영기술지도사법	자격	▪ (경영지도사) 인적자원·재무·생산·마케팅 관리 ▪ (기술지도사) 기술·정보 관리	법무사, 행정사, 노무사 등	파산선고 후 미복권 시 결격사유 (자격요건, 등록요건)
벤처기업법	등록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임원) 기술사업화, BI운영, 개인투자조합 출자·자산운용, 기술이전 등	기술지주회사	
벤처투자법	등록	▪ (창업기획자 임원) 초기창업자 선발·보육, 투자 등 ▪ (창업투자회사 임원) 창업투자, 벤처투자 등	금융투자업자, 금융회사 등	
중소기업창업법	등록	▪ (중소기업상담회사 임원) 사업성평가, 사업알선, 자금조달 자문·대행, BI운영 등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자격	▪ (협동조합 임원) 공동사업, 자금 대부·알선, 경영·기술지도, 공제사업, 단체적 계약 등	협동조합, 신탁, 농협 등	
기술보증기금법	자격	▪ (기보 임원) 재산관리, 기술·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기술보호, 기술신탁관리, 신용조사·정보관리 등	신탁, 한국은행 등	파산선고 시 해임사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자격	▪ (재단 임원) 재산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정보관리, 경영지도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결격사유는 특정 신분이나 자격, 인·허가 등을 취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종래에 유지하던 특정 신분이나 자격, 인·허가 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일반 국민을 보호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결격사유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업이나 사업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며, 도입의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비교형량하여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¹⁾.

한편, 파산선고란 채무자의 변제능력 상실로 채권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선고하는 것(「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및 제305조)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소유한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같은 법 제382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행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음(같은 법 제329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인한 유죄판결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변제 등으로 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 당연복권 또는 신청에 의한 복권이 가능

1)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20, p.360.

하나(같은 법 제574조 및 제575조), 채무자가 사기파산·뇌물공여·허위 진술에 기초한 신용거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이 불허됨(같은 법 제564조).

[표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복권 및 면책불허가 요건

복권의 요건(법 제574, 제575조)		면책 불허가(법 제564조)
당연 복권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1.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할 때 2. 파산의 원인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3. 허위의 채권자 목록 제출 등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면책확정일 이후 7년 미경과, 변제계획에 의해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 5. 법원의 설명 불응, 파산 선고 후 임의로 재산처분을 하는 경우 등 6. 낭비,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 또는 채무를 부담한 때
	2.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후 미복권)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이 요구되는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데 그 이유가 있음.

그러나 파산선고는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발생할 수 있고 그 원인 여하에 따라 거래상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므로, 재산상 신용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등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

여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이 가능하도록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과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 등의 결격사유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²⁾³⁾.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⁴⁾에서도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개별법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선고(후 미복권)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파산선고(후 미복권)를 결격사유로 들지 아니면 개정안과 같이 결격사유에서 제외할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해당 자격제도가 인·허가 규정의 취지·목적, 업무 적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 신분·자격, 인허가 등 제도와 비교하여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⁵⁾.

2)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20, p.363.

3) 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권에 대한 변제능력의 상실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직무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보아 자격상실, 당연퇴직, 면허결격 등의 사유로 하고 있어 파산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5)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20, p.369.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6)에서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대상이 되는 자격·신분·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을 열거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 대하여는 이러한 「행정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결격사유 규정 기준 등을 바탕으로 각각의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후 미복권) 제외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음.

6)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2. 개별법률 검토

(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안 제1조)

안 제1조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하여, 현행법에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고 한다)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제2호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도사제도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사가 될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제>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지도사는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에 대하여 전문적, 종합적인 진단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이 중 경영지도사는 인사·재무·생산·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대하여, 기술지도사는 기술혁신 및 정보기술 등에 대하여 진단, 지도, 상담, 자문, 업무 대행 등을 수행함⁷⁾.

7)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현행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은 지도사가 되려는 자의 경우 지도사자격시험 및 실무수습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⁸⁾하고 있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등 지도사의 결격사유는 지도사 등록거부사유(현행법 제9조) 및 등록 취소사유(현행법 제10조)에도 해당함⁹⁾.

현행법은 지도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지도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지도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행위를 말한다)

8)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지도사의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제8조(지도사의 등록 등) 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거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지도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⁰⁾.

개정안은 이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지도사 결격사유 대상에서 삭제하여 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지도사의 업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전반(인사·재무·생산·마케팅 등) 또는 핵심기술(기술혁신 및 정보기술 등)에 대한 조력(진단, 지도, 상담, 자문, 업무 대행 등)을 수행하므로 상당한 “거래상 신뢰”를 요하는 업무로 보여짐.

현행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도사자격시험 및 실무수습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면 지도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래상 신뢰”를 관별할 수 있는 별도의 검증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를 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2024년 10월말 현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지도사와

1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유사한 국가자격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려는 내용의 법률안이 각각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¹¹⁾¹²⁾¹³⁾에 있는바, 유사한 다른 국가자격사 제도와 균형¹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 여부가 연계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당연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복권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복권이 불가능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할 경우 지도사의 경영진단·지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결여될 가능성이 있으며,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 다른 국가자격사와 동일한 기준(결격사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1)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3460호).

12)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3547호).

13) 박정의의원 대표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3312호).

14)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2)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안 제2조)

안 제2조는 「기술보증기금법」 제23조를 개정하여,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 임원¹⁵⁾의 해임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제3호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임원의 해임) 중소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2. (생략)	제23조(임원의 해임) ----- ----- -----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삭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¹⁶⁾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임.

15) 「기술보증기금법」

제19조(임원) ①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6)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기존에 임원이었던 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여야 함¹⁷⁾).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업무¹⁸⁾는 기본재산 관리, 기술보증, 보증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생략)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생략)

③ (생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8. (생략)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이하 생략)
2. (생략)

18)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보증
 3. 신용보증
 - 3의2. 보증연계투자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 4의2. 중소기업 기술보호
 - 4의3. 기술신탁관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상권(求償權) 행사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9. 중소기업팩토링
 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연계투자, 기술신탁관리, 신용정보 관리 등으로, 그 특성상 금융 관련성이 높고 공공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영과 재산 관리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자가 기술보증기금의 임원직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높은 수준의 윤리성 및 책임성도 담보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술보증기금 임원의 해임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기술보증기금과 유사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관한 설치 근거 법률에서도 현행 「기술보증기금법」과 동일하게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임원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제도 간의 균형¹⁹⁾이 이루어질 수 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기술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8. “기본재산”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9.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1. “중소기업팩토링”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채권을 말한다)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19)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도록 법 개정 여부가 연계될 필요가 있어 보임²⁰⁾²¹⁾²²⁾.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등 금융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임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임원의 해임사유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임원의 해임사유에서 삭제하는 것보다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20) 「신용보증기금법」

제18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④ 시·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22) 「기술보증기금법」

제23조(임원의 해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안 제3조)

안 제3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를 개정하여, 현행법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결정사유 중 그 임원이 파산선고 미복권자인 경우를 삭제(제3항제2호나목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② (생략)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③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u>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u><삭 제></u>
다. ~ 바. (생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²³⁾로서, 현행법에 따르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그 임원이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인 경우와 함께 ⑥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²⁴⁾.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는 기술 사업화와 이를 위한 자회사 설립,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기술의 이전 및 이전 알선 등으로²⁵⁾,

타인의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및 재산의 운용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상 신뢰”와 “재산상 신용”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대학·연구기관의 기술 이전 및 이전 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변동이 수반되므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됨.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결격사유로 그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③ (생략)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4.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4의2.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5.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6.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

7. 대학·연구기관의 교원·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임원의 “준법성·책임성”도 중요한 결격사유에 관한 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출자자의 재산 보호 등을 위해서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임원에 대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유사 제도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도 그 인가 및 등록요건으로 해당 임원이 파산선고 미복권자가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임²⁶⁾.

2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생략)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4. (생략)

③~⑤ (생략)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 4.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안 제4조)

안 제4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7조를 개정하여,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결격사유 중 그 임원이 파산선고 미복권자인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생략)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각 목의 자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의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u>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u><삭 제></u>
다. ~ 자. (생략)	다. ~ 자. (현행과 같음)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생략)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	② ----- -----

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에게만 적용한다. 가. (생략) <u>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다. ~ 카. (생략) 3. ~ 5. (생략) ③ ~ ⑤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가. (현행과 같음) <u><삭 제></u> 다. ~ 카.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²⁷⁾으로서,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출연금 또는 출자금, 상근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²⁸⁾하여야 하는데,

2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전문보육

2.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는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창업기획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등으로, 타인의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한 후 투자업무를 집행한다는 점에서 건전한 투자조합의 자산운용 및 출자자 재산 보호를 위해 “거래상 신뢰”와 “재산상 신용”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창업기획자의 등록 결격사유로 그 임원이 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②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어 창업기획자 임원의 “준법성·사회적 신뢰성·도덕성”도 중요한 결격사유에 관한 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나.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인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조합등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등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5. (생략)

③~④ (생략)

한편, 벤처투자회사는 창업기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 집행, 해외 투자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현행법에 따르면 자본금 규모와 차입 비중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확보 등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²⁹⁾.

벤처투자회사 역시 타인의 자금 모집을 기초로 하는 투자업무를 주로 수행하므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측면이 있으며,

등록 결격사유로 임원 중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벤처투자회사 임원의 “거

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5.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6.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투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의 규모와 그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2. (생략)

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을 중요한 결격사유에 관한 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는 금융회사, 은행,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현행 결격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³⁰⁾.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파산선고 미복권자는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은행법」 제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은행 및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조건으로 임원이 파산선고 미복권자가 아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안 제5조)

안 제5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를 개정하여,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결격사유 중 그 임원이 파산선고 미복권자인 경우를 삭제(제2항제2호나목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4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생략)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 마. (생략) 3. (생략) ③·④ (생략)	제54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u><삭 제></u> 다. ~ 마.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창업 절차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³¹⁾,

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①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을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업무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자금 조달·운영에 관한 자문 및 대행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재정능력과 재산상 신용의 보유 여부를 등록에 관한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한 것으로서 파산선고 미복권자에 대한 취업제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운영에 관한 자문 및 대행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자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추는 것
 -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안 제6조)

안 제6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을 개정하여, 현행 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제1호 개정)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 -----.
1. <u>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1. <u>피성년후견인</u>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협동조합³²⁾³³⁾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 등이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설립하는 비영리 특별법인³⁴⁾임.

32)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3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성격)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원칙적으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으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자 등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음³⁵⁾.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조합원의 탈퇴 사유를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조합원 자격의 상실, 사망 또는 해산, 제명(除名), “파산선고”가 이에 해당함³⁶⁾.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 구매 및 판매, 공동 생산 및 물류, 공동 시설 및 이용, 공동 기술 개발 등의 경제적 기능과 복리후생 사업, 교육 및 훈련,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며³⁷⁾, 중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② 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3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5조(법정 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除名)
4. 파산의 선고

3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①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

기업자의 영세함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도모함.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사장(1명), 이사(5명 이상), 상근 이사(1명)와 감사(2명 이하)의 임원³⁸⁾을 둘 수 있음. 이 중 이사장, 이사, 상근 이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회를 구성³⁹⁾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총회의 위임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무 집행 등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⁴⁰⁾하고,

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5.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조(임원) ①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 이사 1명과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이 경우 상근 이사의 명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⑦조합의 임원 중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3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5조(이사회) ①조합의 업무의 집행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이사회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起債)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칠 사항
4. 총회의 위임 사항과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7. 다른 법인에의 출자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감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독(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역할 등을 수행함⁴¹⁾.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상임 이사를 제외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경우 6개월 이상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⁴²⁾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조합원에 관한 자격요건⁴³⁾을 두고 있을 뿐 임원에 관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단, 상임 이사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일정한 경력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자격요건이 시행령⁴⁴⁾에 규정되어 있음.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0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4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조(임원) ② 상근 이사 외 임원은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④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서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를 선출할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임후보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상근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에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4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②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4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상근 이사의 자격기준) 법 제50조제6항과 법 제9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① 피성년후견인, ②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함께 ⑧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⁴⁵⁾⁴⁶⁾⁴⁷⁾.

을 가진 자”란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을 합산한다.

1.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에서 상근직으로 중소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임명하려는 해당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종과 관련된 연구·교육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

4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개정안은 이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은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⁴⁸⁾,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여도 아니 된다는 점⁴⁹⁾에서 “거래상 신뢰”를 갖춘 자일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동 구매

아니한 자

6.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46)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성격)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8조(벌칙)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및 판매, 공동 생산 및 물류, 공동 시설 및 이용, 공동 기술 개발 등의 경제적 기능과 복리후생 사업, 교육 및 훈련,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임원의 “재산상 신용”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5조제1항 제4호⁵⁰⁾에서는 “파산선고”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법정 탈퇴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중 상임 이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을 판별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5조(법정 탈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除名)
4. 파산의 선고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사회적 신뢰성·도덕성”도 중요한 결격사유에 관한 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조합원을 위한 공동사업, 자금의 대부·알선, 경영·기술지도, 공제사업, 단체적 계약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의 특성상 임원의 신뢰성·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법정 탈퇴 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 개정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안 제7조)

안 제7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제4항을 개정하여, 현행 법상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⁵¹⁾ 임원의 해임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제3호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③ (생략)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파산선고를 받았을 때</u>	<u><삭 제></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⁵²⁾하는 법인으로, 기본재산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5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3(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④ 임원의 임명권자는 임원이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한다.

5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 경영지도 등의 금융 관련성이 높고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⁵³⁾.

한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⁵⁴⁾,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공동사업, 신용보증·신용조사 기법의 연구·개발·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등 금융 관련성과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⁵⁵⁾.

5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신용보증”이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 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7. “기본재산”이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 및 중앙회가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8.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5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재보증”(再保證)이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중앙회가 재단의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填)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5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설치) ①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

이처럼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수행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금융 관련성이 높고 공공성이 요구되므로, 경영·재무에 관하여 충분한 신용과 신뢰를 갖춘 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고도의 윤리성 및 책임성도 담보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임원의 해임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할 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유사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관한 설치 근거 법률에서도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동일하게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임원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한 제도 간의 균형⁵⁶⁾이 이루어질 수

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보증·신용조사 기법의 연구·개발·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2.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5. 재단의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연수
6. 재단에 대한 재보충에 관한 사항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56)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있도록 법 개정 여부가 연계될 필요가 있어 보임⁵⁷⁾⁵⁸⁾⁵⁹⁾.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신용보증 등 금융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임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임원의 해임사유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임원의 해임사유에서 삭제하는 것보다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 6788-5463

-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57) 「신용보증기금법」

제18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8) 「기술보증기금법」

제23조(임원의 해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④ 시·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